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합57256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전창수

변론 종결2020. 7. 10.

판결 선고2020. 8.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575,393원 및 그 중 532,321,664원에 대하여는 2019. 9. 3.부터, 그 중 808,387,929원에 대하여는 2019. 10. 7.부터 각 2019. 10. 2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서 2019. 7. 12. 이루어진 50,000,000원의 교부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서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2017. 7.

12.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에게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7. 12. 접수 E로 마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제3항 및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577,963원 및 그 중 532,321,664원에 대하여는 2019. 9. 3.부터, 808,387,929원에 대하여는 2019. 10.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처형이다.

나.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약정서를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서'라고 하며, 개별 신용보증 약정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 순번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순번 ○ 신용보증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2011. 4. 12.	F	396,000,000원 (374,000,000원으로 변경)	2012. 4. 12. (2020. 4. 3.로 변경)	85%
2	2014. 5. 16.	G	57,000,000원	2015. 5. 15. (2020. 5. 8.로 변경)	95%
3	2014. 5. 16.	H	475,000,000원	2015. 5. 15. (2020. 5. 18.로 변경)	95%
4	2018. 1. 25.	I	425,000,000원	2019. 1. 25. (2020. 1. 23.로 변경)	85%

2)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피고 A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제13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금액 또는 원고의 회수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충당 대상 대위변제금이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순서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이후부터는 연 10%이다.

다. 피고 A의 대출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표>

2011. 4. 28.	중소기업은행	440,000,000원	이 사건 순번 1번 신용보증 약정
2014. 5. 16.	J은행	60,000,000원	이 사건 순번 2번 신용보증 약정
2014. 5. 16.	J은행	500,000,000원	이 사건 순번 3번 신용보증 약정
2018. 2. 14.	중소기업은행	500,000,000원	이 사건 순번 4번 신용보증 약정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9. 6. 5.경부터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왔고, 2019. 7. 31.경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9. 9. 3. J은행에 537,382,214원(= 이 사건 순번 2 신용보증 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57,642,756원 + 이 사건 순번 3 신용보증 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479,739,458원)을, 2019. 10. 7. 중소기업은행에 812,716,259원(= 이 사건 순번 1 신용보증 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381,402,740원 + 이 사건 순번 4 신용보증 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431,313,5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합계 1,865,800원(= 2019. 9. 20. 가압류 비용 821,600원 + 2019. 9. 20. 가처분 비용 829,800원 + 2019. 9. 25. 가처분 비용 214,400원)이다.

마. 원고의 구상금채권 일부 회수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중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9,388,880원을 회수하였다.

<표>

2019. 10. 7.	1,760,540원	이 사건 순번 1 신용보증 약정 관련
2019. 9. 3.	542,200원	이 사건 순번 2 신용보증 약정 관련
2019. 9. 3.	4,518,350원	이 사건 순번 3 신용보증 약정 관련
2019. 10. 7.	2,567,790원	이 사건 순번 4 신용보증 약정 관련
합계	9,388,880원	

바.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은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제22층 L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7. 4. M에 위 아파트를 4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9. 7. 12. 처형인 피고 C에게 위 아파트의 위 매도대금 430,000,000원 중 소비하고 남은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라고 한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기재 각 상표권(이하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9. 7. 12.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피고 D에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양도하였고, 특허청 2019. 7. 12. 접수 접수번호 E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이전등록절차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575,393원(= 원고의 J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537,382,214원 +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812,716,259원 +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1,865,800원 - 원고의 회수금 9,388,880원) 및 그 중 532,321,664원(= 원고의 J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537,382,214원 - J은행과 관련된 회수금 542,200원 - J은행과 관련된 회수금 4,518,350원)에 대하여는 2019. 9. 3.1) 부터, 그 중 808,387,929원(=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812,716,259원 - 중소기업은행과 관련된 회수금 1,760,540원 - 중소기업은행과 관련된 회수금 2,567,790원)에 대하여는 2019. 10. 7.2) 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9. 10.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19. 9. 3. 및 2019. 10. 7.에 각 회수한 금액에 관하여 위 각 금액을 회수한 날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추가적으로 구하나,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과 원고가 이행한 보증채무액 중 일부 금액의 회수일이 같은 날이라면, 그 회수된 금액에 관하여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 당시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9. 9. 3. 및 2019. 10. 7.

J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일자에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와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는 위 일시보다 이전인 2019. 7. 12.에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와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구상금채권 또는 연대보증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이 체결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와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피고 A과 피고 B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와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가 있는 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9. 7. 31.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와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 당시 피고 B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9. 9. 3. 및 2019. 10. 7.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피고 B의 재산상태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 및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 당시 피고 B이 가지고 있는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342,575,393원, N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5,766,000원, O에 대한 대출금채무 4,438,000원, P에 대한 보증채무 50,000,000원 합계 1,422,779,393원이었고, 반면에 적극재산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참조), 피고 C에게 교부된 50,000,000원 및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가액은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와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고, 이 사건 각 상표권을 피고 D에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 및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위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수익자인 피고 C 및 피고 D의 악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C와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 C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피고 A의 회생신청을 위한 비용과 예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50,000,000원을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B이 한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C가 사해행위에 관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바로 증여행위로 평가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처분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4), ② 피고 C가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 C는 피고 B의 처형으로서 가족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증여에 해당하거나, 설령, 변제에 해당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B과 피고 C가 통모하여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D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A이 생산하는 마스크 팩 등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인 피고 D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중국 측 거래상대방은 피고 D가 이 사건 각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세웠고, 피고 B은 중국에서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상표권을 피고 D에 이전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D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피고 D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B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D에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인 피고 B의 책임재산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D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피고 C의 경우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피고 C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경우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피고 D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기찬

판사권혁준

판사김창용

별지

-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위 2019. 9. 3.은 원고가 J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순번 2, 3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이다.
- 2)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순번 1, 4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이다.
- 3)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동일하므로,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한다.
- 4) 위 대법원 2005다28686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안이다.